

능하다고 判斷되어 이를 解除하여 주기로 決定하였으며,

둘째, 九老區 始興洞 1004番地 정준호가 提出하고 林承后議員이 紹介한 風致地區解除 要求는 隣接地域에 機能공구상가가 있고 風致 地區까지 商街化되어 있어 風致地區로서는 機能이 상실되어 있다고 判斷되어 風致地區 中 冠岳山 및 裸岱地地域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地域은 風致地區에서 解除하여 주기로 決定하였습니

다. 셋째, 銅雀區 黑石洞 186番地의 10 임인도가 提出하고 金禹仲이 紹介한 銅雀區 黑石1洞 170番地 一帶 風致地區解除 要求도 이 一帶가 이미 50年前인 1942년에 地區指定된 이래 周邊地形이 완전히 달라졌고 低所得市民의 不良住宅이 밀집되어 住宅改良도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이 一帶에 日帝때 지은 50여채의 小型住宅은 붕괴위험이 있는 등 風致 地區로서의 保全이 이미 상실되어 있는 現況을 감안하여 이 地域도 地域實情에 맞도록 風致地區를 解除하여 주기로 決定하였습니

다. 넷째, 蠶院洞 73番地 강길선이 提出하고 張精一議員이 紹介한 解除된 學校用地 原狀還元 要求는 住民의 절실한 要求로 인정되나 現地域은 法律的으로나 豫算形便으로 보아 學校用地에서 原狀還元은 不可能하다고 判斷되어 이 請願은 受容이 不可能한 委員會 決定事項으로 處理되었음을 報告합니다.

이상 報告드린 대로 우리 委員會에서는 地域與件上 住民의 要求가 妥當한 것은 과감히 受容하여 주기로 하고 實情에 맞지 않는 것은 受容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 決定 事項이 本會議에서 採擇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貞順 그러면 始興3洞 風致地區解除 要求에 관한 請願 外 2件에 대하여 都市 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각각 採擇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始興3洞 風致地區解除 要求에 관한 請願 審査報告書

1993.2.

都市 整備委員會

1. 審査經過

○請 願 者: 九老區 始興洞 1004 석수빌라 2洞 115호 정준호

○紹介議員: 林承后議員

○接受日字: 1992.8.12(접수번호 46번)

○回附日字: 1992.8.21

○上程日字: 第60回 臨時會 第2次 都市 整備委員會(1993.2.24) 上程 議決

2. 請願要旨

○九老區 始興3洞 일원 79萬3千5百㎡(약 5,200세대, 16,000여 住民 居住地域)는 경수1번 50m 국도변 좌우에 위치한 地域으로 현재는 철재 및 産業用材 流通商 街가 건설 완공되어 1,200個 점포 및 2,400個의 事務室 등이 所在, 商街가 형 성되어 유동인구도 적지않은 실정임에도

○계속 風致地區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老 朽建物에 대한 增·改築이 침체되어 미관 이 불량함은 물론,

○경수국도와 京釜鐵道 사이에 위치한 準工 業地域內 소규모 영세공장들도 상습 침수 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增 ·改築에 따른 建蔽率適用이 불리하여 施 設 改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增·改築 활성화를 통한 都市美觀 회복과 財產權 行使에 不利益이 없도록 風致地區 를 조속 해제할 것을 요구함.

3. 趣旨說明 要旨(林承后議員)

○1969年 4月 風致地區로 지정된 九老區 始興3洞 地域은 경수 1번 국도(폭 50 m)가 관통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제와

<p>붙어 있는 地域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 主要 施設 및 보안 목표가 없는 다세대 密集住宅地域 • 경수국도 양쪽은 완전 상업지역화되어 있음. • 산업용재 流通商街와 철재상가가 위치하고 있음. • 또한 1990年 11月 일부지역이 風致地區 해제로 타 地域 住民과의 위화감 造成등 <p>동 地域의 風致地區 解除 民願은 그 타</p>	<p>당성이 있음.</p> <p>4.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 宋在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風致地區 解除 요구한 始興3洞 지역은 京畿道와 인접지로서 京畿道 風致地區 건 폐율은 40%로서 시흥지구와는 차이가 있음. ○ 請願人은 風致地區 解除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로 제정될 區의 建築 條例로서 40%로 緩和하여 주는 것이 좋은지 현 지 확인후 處理 意見임.
<p>5. 質疑 및 答辯 要旨(答辯者: 都市計劃局長 具惇會)</p>	
<p>질 의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京畿道와 인접지 風致地區를 京畿道와 동일하게 緩和할 用意는 없나? ○ 現지는 商街地域化되어 風致地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 ○ 시내 風致 전체를 再檢討하여 解除 가능한 곳은 시 자체로 解除할 方法은 없는가? 	<p>답 변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改正된 建築法에 따라 區 建築條例로서 40% 완화가 가능할 것임. ○ 風致地區 지정 目的에 맞추어 가능한 保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989年度에 일제히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整備는 시기상조라고 思料 됨.
<p>6. 討論 要旨 없음.</p> <p>7. 小委員會 審査內容</p> <p>현지를 확인한 바, 인접지에 기계공구상 가가 있어 請願要求地域까지 상가지역화되어 있어 風致地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p> <p>冠岳山 및 공대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風 致地區를 解除할 수 있도록 청원 수용 건의</p> <p>8. 審査結果</p> <p>小委員會에서 審査한 내용대로 관악산자락 공대지 地域을 제외한 나머지 풍치지역은 이를 해제하여 주기로 決議</p> <p>9.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p> <p>10. 기타 必要事項 없음.</p> <p>11. 意見書</p> <p>請願要求한 始興3洞 風致地區는 준상가지 역화되어 사실상 風致地區로서 保存은 불가</p>	<p>능한 상태이므로 地域現況에 맞게 風致地區 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아직도 대지로 남아 있는 관악산 자연공원 인접 공대지는 解除地域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思料됨.</p> <hr/> <p>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서</p> <p>1993.2. 도시정비위원회</p> <p>1. 심사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원 인 : 전정식, 서대문구 창천동 100-99 ○ 소개의원 : 박상동의원 ○ 접수일자 : 1992.10.21(접수번호 60) ○ 회부일자 : 1992.10.22